LH 부산울산지역본부

신도시의 가치에 LH의 신뢰를 더합니다

정관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리며, 1,934세대 대단지의 여유로움까지–

부산정관 7단지(A-1BL) 국민임대아파트

LH 부산울산지역본부

www.lh.or.kr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오시는길 지하철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초량역 하차
버 스 : 부산역 버스정류장 하차

정관신도시 LH임대아파트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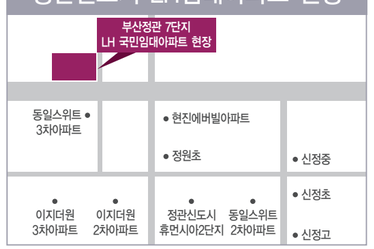

1600-1004

동부산권의 교통, 생활, 교육, 환경 등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펼쳐지는 정관신도시

BEST LOCATION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모전리 681번지)
사업면적	75,038.90㎡
건축면적	9,851.26㎡
건 폐 율	13.13%
연 면 적	119,561.90㎡
용 적 률	125.78%
규 모	아파트(국민임대) : 16개동 (12~15층) / 1,934세대
형 별 세 대 수	전용 24㎡A형 (472세대), 24㎡B형 (104세대), 26㎡형 (590세대), 37㎡형 (464세대), 46㎡형 (304세대)

부산 · 울산 · 경남을 연결하는 우수한 교통망

-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정관~석대간 고속화도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기본 계획 발표 등으로 더욱 빠르게 부산과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안전한 도보통학권의 교육환경

- 단지 인근 도보통학 가능한 모전초등학교, 모전중학교, 신정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
- 정관도서관, 정관박물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최상의 교육환경

광역교통망

모전중학교

자족신도시의 원스톱 라이프 스타일

- 홈플러스, 멀티플렉스(예정) 등 중심 상업지의 각종 인프라와 함께 부산프리미엄아울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등 대단위 쇼핑시설까지 더 가까이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쾌적한 청정환경

- 단지 인근 좌광천 수변공원과 중앙공원, 윗골공원, 구목정공원 등 다양한 근린공원이 인접
- 넓은 동간거리 및 조경면적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홈플러스

좌광천 수변공원

※ 상기 지역도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속 힐링 아파트!

신도시의 생활 편리함과 여유로움
햇살, 바람, 생태하천이 살아 숨 쉬는 곳

BEST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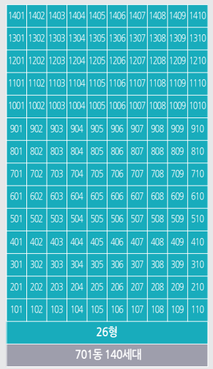

26형
701동 14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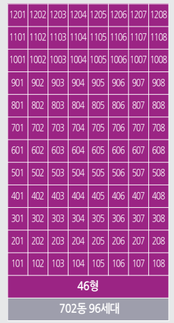

46형
702동 96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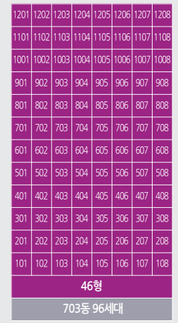

46형
703동 96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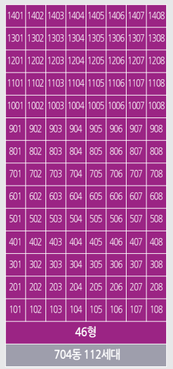

46형
704동 11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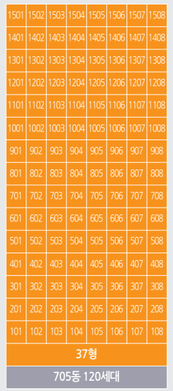

37형
705동 12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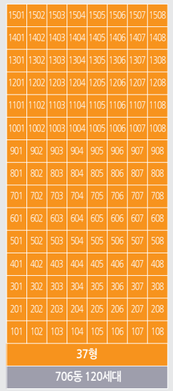

37형
706동 12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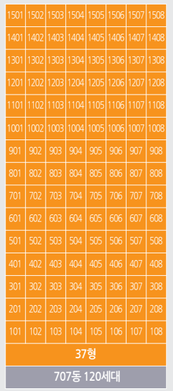

37형
707동 12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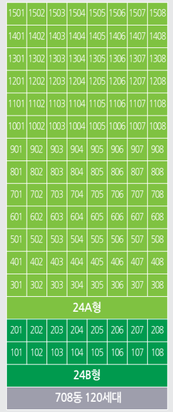

24A형
24B형
708동 120세대

24A형	472세대
24B형	104세대 ※주거전용 세대
26형	590세대
37형	464세대
46형	304세대
계	1,93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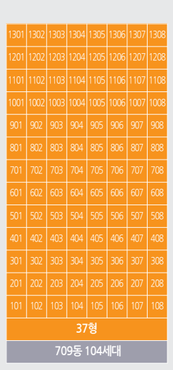

37형
709동 104세대

24A형
24B형
710동 104세대

24A형
24B형
711동 11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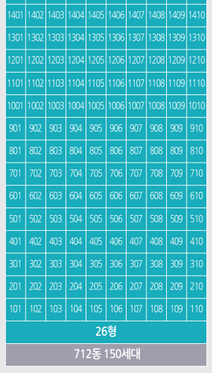

26형
712동 15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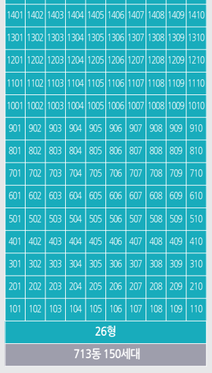

26형
713동 150세대

24A형
24B형
714동 12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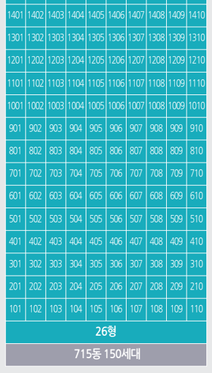

26형
715동 150세대

24A형
24B형
716동 120세대

※ 본 조감 및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이미지컷으로 건물의 색채, 마감재, 측벽문양 등 외관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경시설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24㎡ A

472세대

멋지고 당당한 싱글라이프를 위한 실속형 공간!

계약면적	
전 용 면 적	**24.7200㎡**
주거공용면적	12.6758㎡
공 급 면 적	37.3958㎡
기타공용면적	1.5024㎡
주 차 장 면 적	8.7642㎡
계 약 면 적	47.6624㎡
전용면적	
침실 / 거실	8.9700㎡
주방 / 식당	11.0800㎡
욕 실	2.9900㎡
현 관	1.4300㎡
발코니초과	0.2500㎡
합 계	24.7200㎡
서비스면적	
발 코 니	6.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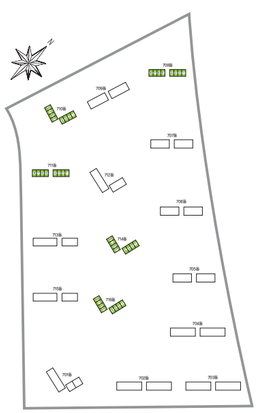

※ 면적은 발코니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투시도 상의 식탁 및 가구, 실내장식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마감재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평면도CG(아이소메트릭), 조감도, 단지배치도, 홍보물사진, 그래픽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나부산울산지역본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B

104세대 (주거약자용)

고령자, 노약자 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계약면적	
전 용 면 적	**24.7900㎡**
주거공용면적	12.7117㎡
공 급 면 적	37.5017㎡
기타공용면적	1.5067㎡
주 차 장 면 적	8.7890㎡
계 약 면 적	47.7974㎡
전용면적	
침실 / 거실	8.9700㎡
주방 / 식당	11.0200㎡
욕 실	3.0800㎡
현 관	1.4700㎡
발코니초과	0.2500㎡
합 계	24.7900㎡
서비스면적	
발 코 니	6.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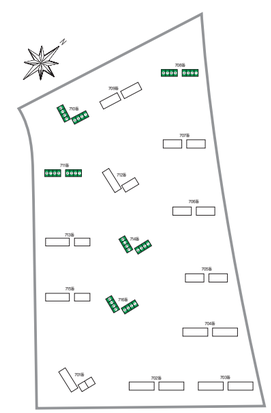

※ 면적은 발코니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투시도 상의 식탁 및 가구, 실내장식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마감재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평면도CG(아이소메트릭), 조감도, 단지배치도, 홍보물사진, 그래픽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나부산울산지역본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m²

590세대

짜임새와 심플함이 묻어나는 세련된 공간!

계약면적	
전 용 면 적	26.8300m²
주거공용면적	13.7577m²
공 급 면 적	40.5877m²
기타공용면적	1.6306m²
주 차 장 면 적	9.5123m²
계 약 면 적	51.7306m²
전용면적	
침실 / 거실	10.8000m²
주방 / 식당	11.3600m²
욕 실	2.9900m²
현 관	1.4300m²
발코니초과	0.2500m²
합 계	26.8300m²
서비스면적	
발 코 니	6.12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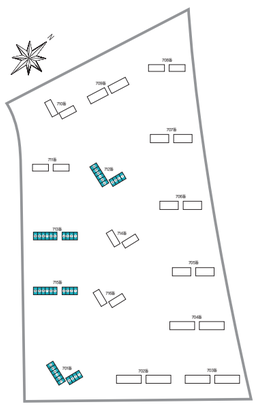

※ 면적은 발코니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0.3025평)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투시도 상의 식탁 및 가구, 실내장식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마감재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평면도CG(아이소매트릭), 조감도, 단지배치도, 홍보물사진, 그래픽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나부산울산지역본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 m²

464세대

알콩달콩 신혼부부를 위한 핑크빛 공간!

계약면적	
전 용 면 적	37.7000m²
주거공용면적	19.3316m²
공 급 면 적	57.0316m²
기타공용면적	2.2914m²
주 차 장 면 적	13.3661m²
계 약 면 적	72.6891m²
전용면적	
침실 / 거실	14.5700m²
침 실 1	6.7300m²
주방 / 식당	11.4500m²
욕 실	3.2000m²
현 관	1.5900m²
발코니초과	0.1600m²
합 계	37.7000m²
서비스면적	
발 코 니	7.17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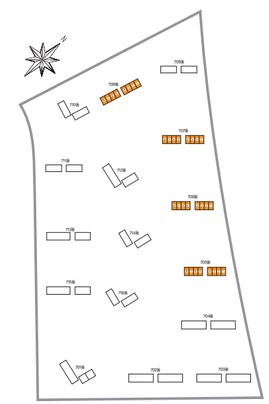

※ 면적은 발코니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0.3025평)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투시도 상의 식탁 및 가구, 실내장식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마감재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평면도CG(아이소매트릭), 조감도, 단지배치도, 홍보물사진, 그래픽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나부산울산지역본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 m²

304세대

행복한 가족의 꿈이 영글어지는 아늑한 공간!

계약면적	
전 용 면 적	: 46.9400m²
주거공용면적	: 24.0697m²
공 급 면 적	: 71.0097m²
기타공용면적	: 2.8530m²
주 차 장 면 적	: 16.6421m²
계 약 면 적	: 90.5048m²
전용면적	
침 실 1	: 9.4800m²
침 실 2	: 7.6300m²
거 실	: 9.4900m²
주방 / 식당	: 15.4600m²
욕 실	: 3.2000m²
현 관	: 1.6800m²
합 계	: 46.9400m²
서비스면적	
발 코 니	: 9.49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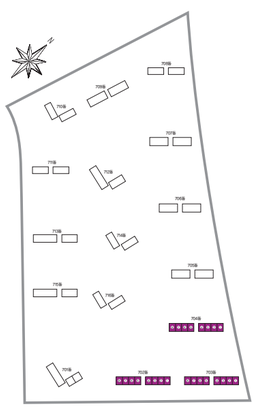

※ 면적은 발코니 비확장형 면적이고,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0.3025평)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투시도 상의 식탁 및 가구, 살림장식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마감재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평면도CG(아이소매트릭), 조감도, 단지배치도, 홍보물사진, 그래픽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나부산울산지역본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의 실현

작은 곳까지도 세심하고 편리하게 배려합니다

■ 거실

비디오폰(7인치 컬러 LCD) / 거실등(아크릴 또는 강화유리)
거실바닥재(룸카펫) / 거실벽지(실크벽지(벽), 발포벽지(천정))

■ 현관

현관도어록(레버형) / 신발장(HPM) / 현관바닥(자기질타일)
현관등(아크릴 또는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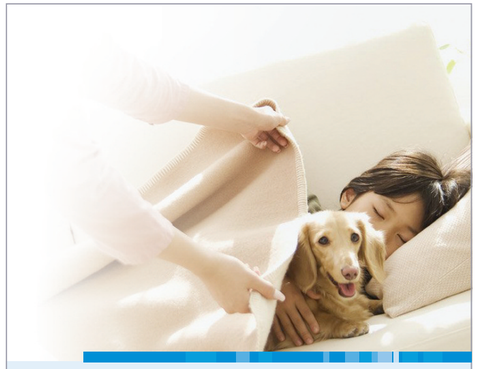

■ 침실

침실바닥재(룸카펫) / 침실벽지(실크벽지(벽), 발포벽지(천정))
침실문짝(ABS문짝) / 창호(합성수지창호)

■ 발코니

발코니새시(합성수지창호)
세탁기수전(D15(1구커플링))

■ 주방

싱크대(LPM) / 레인지후드(슬림형) / 주방바닥재(룸카펫)
주방싱크수전(절수형(니켈-크롬)) / 주방타일(도기질타일)

■ 욕실

세면기(백색(대형)) / 양변기(2단절수(백색))
샤워수전(높이조절형(니켈-크롬)) / 세면기수전(원홀형(니켈-크롬))
욕실타일(도기질타일(벽), 자기질타일(바닥))

■ 기타/ 정보통신

위성TV 수신시스템(설치) / 정보통신(초고속정보통신(1등급))
CCTV시스템(단지출입구, 놀이터, 동현관, 승강기)

※ 마감재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 실제 시공되는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정관 7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부산정관 A-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현장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간편한 인터넷 청약을 권장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2016. 08. 11 ~ 2016. 08. 12. 10:00 ~ 16:00)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지구(블록)선택	주택형 선택	우선 / 일반 / 주거약자용공급 선택	순위선택 및 유의 / 필수사항 등 확인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신청 정보, 배점기준정보 등 작성	신청내용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 **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모전리 681번지) 국민임대주택 1,934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 계	계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기타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24A	24.72	12.6758	1.5024	8.7642	47.6624	472	-	401	71	708, 710, 711, 714, 716	7,000	1,400	5,600	135,000	복도식 / 지역난방 / 벽식구조 / 평지붕	(+)15,000	22,000	60,000	'17.07
																(-)3,000	4,000	145,000	
24B (주거약자용주택)	24.79	12.7117	1.5067	8.7890	47.7974	104	104	-	-	708, 710, 711, 714, 716	7,000	1,400	5,600	135,000		(+)15,000	22,000	60,000	
																(-)3,000	4,000	145,000	
26	26.83	13.7577	1.6306	9.5123	51.7306	590	-	502	88	701, 712, 713, 715	7,600	1,520	6,080	142,000		(+)16,000	23,600	62,000	
																(-)3,000	4,600	152,000	
37	37.70	19.3316	2.2914	13.3661	72.6891	464	-	396	68	705, 706, 707, 709	14,800	2,960	11,840	198,000		(+)23,000	37,800	83,000	
																(-)9,000	5,800	228,000	
46	46.94	24.0697	2.8530	16.6421	90.5048	304	-	256	48	702, 703, 704	23,100	4,620	18,480	259,000		(+)24,000	47,100	139,000	
																(-)15,000	8,100	309,00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 · 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30)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 ·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증등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371,660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4인가구	3,775,200원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인이상가구	3,832,780원 이하	
자 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지체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 50㎡ 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소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며,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소유권을 소멸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등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보유토지가 동일 지번일 경우 인정)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구 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장소(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용 50㎡ 미만	우선공급대상자			2016.07.25(월) ~ 2016.07.27(수) (10:00~16:00)	2016.08.04(목) 16: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2016.08.11(목) ~2016.08.12(금) (10:00~16:00)	2016.09.21(수) 16:00 이후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또는 ARS (1661-7700)	2016.09.29(목) ~ 2016.09.30(금) (10:00~17:00)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대회의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동 1199-1번지)
	주거약자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50%이하자	1순위					
			2순위					
			3순위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자	1순위					
			2순위					
			3순위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50㎡ 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 정보만) → 소득 · 자산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5.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형별	일반공급	주거약자용주택공급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철거민 등	만65세이상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 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 피해자, 탄광 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귀환국군포로	3자녀이상가구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주택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24	71	104	401	47	14	10	19	5	4	4	5	10	14	10	47	47	14	10	141
26	88	–	502	59	18	12	24	5	6	6	5	12	18	12	59	59	18	12	177
37	68	–	396	47	14	9	18	5	5	5	5	9	14	9	47	47	14	9	139
46	48	–	256	30	9	6	12	3	3	3	3	6	9	6	30	30	9	6	91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 2,408,330원 / 3,371,660원 4인 / 2,696,570원 / 3,775,200원 5인 이상 / 2,737,700원 / 3,832,780원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운대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 미만 신청 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하고 있는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⑪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⑫ 「아동복지법」제3조제8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⑭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⑮ 「해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⑯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 ·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이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2011.07.01 이후 혼인)이고, ②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013.07.01 이후 혼인)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2011.07.01~2013.06.30 이전 혼인)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 불법낙태 ·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철거민, 국가 유공자 등,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합산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접수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1966.06.30 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 (1976.06.30 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 (1986.06.30 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2011.06.30 이전 전입)	3년 이상 5년미만 (2011.07.01~ 2013.06.30전입)	1년이상 3년미만 (2013.07.01~ 2015.06.30전입)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1997.07.01 이후 출생)미만, 태아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1951.06.30 이전 출생)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원은 제외) : 3점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건설근로자)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대상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구 분	3점	2점	1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⑤, ⑥, 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에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 · 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 · 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 · 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만6세 미만 형제 · 자매는 만6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지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2011.06.30 이전 전입)	3년 이상 5년미만 (2011.07.01~ 2013.06.30전입)	1년이상 3년미만 (2013.07.01~ 2015.06.30전입)
③ 사회취약계층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6. 신청서류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 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산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우선공급 또는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 · 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 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 · 군 · 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기간제 · 파견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만법상 미성년(만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퇴주) 확인서	시 · 군 · 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시 · 군 · 구청
	⑪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포함) 또는 그 유족, 5 ·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 · 군 · 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⑱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⑲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 · 군 · 구청
	⑳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㉑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주민센터
주거 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07.0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07.0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⑤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 · 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중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및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 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 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③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등기소 중소기업청 (해당 직장)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지방보훈청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 군 · 구청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기타사항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07.0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07.0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⑤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 · 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⑦ 만법상 미성년(만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퇴주) 확인서	시 · 군 · 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시 · 군 · 구청
	⑪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포함) 또는 그 유족, 5 ·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 · 군 · 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⑱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⑲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 · 군 · 구청
	⑳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㉑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지방보훈청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 군 · 구청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청약순위확인 제출 생략 안내 참조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청약저축 기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기타 청약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안내**
– 청약 순위 확인과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청약자 순위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청약순위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을 참고하시어 청약시 순위 및 납입횟수 기재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주택명 : 부산정관7단지(A-1블록) 국민임대, 주택관리번호: 2016000800)**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기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입주자저축 순위(기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기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순위 확인서 선택 →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입주자저축 기입은행 방문 → 입주자저축순위(기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 · 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20%) 이상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자립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세티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입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경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 경신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경신계약시 10% 이하 / 100% / 110% 10% 초과 30% 이하 / 110% / 120% 30% 초과 50% 이하 / 120% /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기사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이 공고일 시점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 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경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입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입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1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지표등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면허제주소, 전월변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입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 북동측에 고속화 도로가 위치해 있어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서측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부산해이루학교가 있으며, 단지 지상층보다 10~12m 정도의 높은 위치에 농업실습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아파트 동에서는 농업실습지에서 발생되는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부산정관핸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주변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경계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등 이용해를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 및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의 의료시설이주자정책 포함)과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은 단지외 도로와 고저차가 최대 약 19m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차폐될 예정입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시설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바는가평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 배관 설치로 인하여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7D동 옆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여 7D동 세대에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되지주자사전검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인전시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중 측세대 등 직접 외기에 면한 세대는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직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모한 제공되며 일부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옥상층의 내부에는 PD 점검구가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에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2층 타입)를 제외한 일반세대는 시스템에어컨(EHP)이 적용되어 있으며, 주거약자용 세대에 한하여만 욕실에서 난방이 적용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2층 타입) 욕실만 포켓도어가 적용되며, 주거약자용 세대와 일반세대는 화장실 미감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D동 옥탑지붕에는 공장전체-가 설치되며, 7D동 옥탑에는 소방용 물탱크가 설치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이때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면제 해당됐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를 예정하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주택을 입주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입주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입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입신불법내태 등이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여 입주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전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전대료에해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일당기일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